

	장학 규정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1984. 8. 9.
		최종개정일자	2019. 2. 01.
		담당부서	교무입학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47조에 의하여 대학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학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은 외부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장학위원회

제3조(설치와 구성) ①제1조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 위원은 7인으로 구성하며, 기획산학처장, 교무입학처장, 행정지원처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학과장 중 4명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교무입학처장이 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①장학에 관한 기본방침
- ②장학금 일체의 지급 기준
- ③장학생선발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 ④본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⑤장학금에 관한 기타 중요 사항

제5조(회의) ①정기총회는 개학 전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 사정에 따른다. 임시총회는 총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명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6조(승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학담당자로 한다.

제3장 장학생 선발

제8조(대상) 장학금 지급 대상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에 준한다.

제9조(인원배정) 위원회는 결정된 인원을 학과별로 배정하되 배정은 학과별 재학생수에 기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선발) ① 성적장학생은 매 학기 성적순위를 각 학과 확인 후 선발한다.

②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필요한 구비서류를 요구 기간 내에 장학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벌을 받은 자
2.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장학생으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정되는 자

제4장 장학금 종류

제11조(구분)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12조(교내장학금) 교내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장학금 가. 1종 : 전체수석 나. 2종 : 성적우수장학금 다. 3종 : 특별장학금 2.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4. 형제자매 장학금 5. 교직원자녀 및 배우자 장학금 6. 법인산하 재직자 장학금 7. 공로 장학금 8. 재입학 장학금	9. 보훈 장학금 10. 새터민 장학금 11. 체육특기자 장학금 12. 가계곤란장학금 13. 기타 장학금 14. 교직원존비속형제자매 및 자녀 장학금 15. 다문화 가족 장학금 16. 기관장 추천 장학금 17. 교직원 배우자 친형제 자매 장학금	18. 교직원 특별 추천장학금 19. 자매결연 재직자 장학금 20. 장애학생 특별지원 장학금 21.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장학금 22. 학업장려 장학금 23. 입학 장려 장학금 24. 외국인전형 장학금 25. 봉사 장학금 26. 근로 장학금 27. 해외탐방 장학금
--	---	--

제13조(교외장학금) 교외장학금은 기탁자의 제시요건에 우선한다. 단, 제시 요건이 없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① 국가장학금 ② 한국마사회(KRA) 장학금 ③ 아산복지재단 장학금 ④ 인재육성 장학금	⑤ 보훈 장학금 ⑥ 동문회 장학금 ⑦ 복지 장학금 ⑧ 광주은행 장학금	⑨ 새마을금고 장학금 ⑩ 산학협력 장학금(병원) ⑪ 기타 외부장학으로 인정된 장학금
---	---	--

제5장 장학금 지급 및 관리

제14조(지급액) 장학금의 지급기준은 대학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15조(수혜자의 의무) ① 장학 수혜학생은 수혜조건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수혜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에는 장학금 수혜를 취소한다.

제16조(실격)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 또는 취소한다.

① 제적자

- ②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 ③평균평점이 규정에 미달할 때
- ④기타 학칙에 위반하였을 때

제17조(이중수혜 제한) 대학은 입학특별장학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학 중 성적장학과 입학특별장학의 중복수혜가 불가하며, 성적장학생으로 선발된 대상자들은 입학특별장학금액과 비교하여 장학금액이 많은 장학을 적용하되, 성적장학금액이 입학특별장학 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 지급한다. 단, 교외장학금, 가계장학금, 형제자매장학금, 공로장학금, 학업장려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안에서 이중수혜를 할 수 있다.

제18조(예산 내 지급) ①장학금은 납입금 및 별도 책정된 장학금 예산액 내에서 합산하여 지급 한다.

②교외장학금 중 개인 후원 및 의무복무 등과 관련된 교외장학금을 받을 경우와 학업장려 장학금, 근로 장학금, 공로 장학금은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14.2.6>

제19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1984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1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2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02월 1일부터 시행한다.